

『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3년 10월 20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3년 10월 21일

라. 상정일자 : 2003년 11월 3일

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김 해 운

나. 제안이유

건축법의 일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, 그동안 건축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보완 정비하려는 것임

다. 주요내용

○ 건축위원회 구성 위원 수 조정

(15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20인 이내)

○ 사용승인 현장조사. 검사자 지정방법

(건축주가 지정하는 것을 구미시건축사회에 업무대행건축사로 등록된 건축사 중에서 건축사회에서 지정)

○ 현장조사.검사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조정 - 허가수수료의 50~100%

○ 건폐율 및 용적율 조항 삭제 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이관

○ 공동주택 채광방향 높이제한을 2.5배 이하에서 2배 이하로 조정

○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1회에서 3회로 조정

라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
 - : 건축법 제4조, 제23조, 제47조, 제20조, 제83조
 - : 건축법시행령 제5조, 제20조, 제86조
 - : 건축법시행규칙 제10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정 석 광

- 본 조례안은 건축법의 일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, 그동안 건축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보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서
-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구성위원 수,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.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및 수수료, 공동주택 채광방향 높이제한.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